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2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용량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작 중단된 음식물류폐기물봉투 종류의 수수료 규정 삭제(별표1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10. 26. ~ 2023. 11. 15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원안의결(2024. 2. 7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
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
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1]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 (제9조제2항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일반가정용</th> <th colspan="2">사업장용</th> </tr> <tr> <th style="color: red;">2016년까 지</th> <th style="color: red;">2017년부 터</th> <th style="color: red;">2016년까 지</th> <th style="color: red;">2017년부 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ℓ</td><td style="color: red;">70</td><td>100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 <tr><td>2ℓ</td><td style="color: red;">140</td><td>190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 <tr><td>3ℓ</td><td style="color: red;">210</td><td>300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 <tr><td>5ℓ</td><td style="color: red;">350</td><td>500</td><td style="color: red;">500</td><td style="color: red;">700</td></tr> <tr><td>10ℓ</td><td style="color: red;">700</td><td style="color: red;">1,000</td><td style="color: red;">1,000</td><td>1,400</td></tr> <tr><td>20ℓ</td><td style="color: red;">1,400</td><td style="color: red;">2,000</td><td style="color: red;">2,000</td><td>2,8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일반가정용		사업장용		2016년까 지	2017년부 터	2016년까 지	2017년부 터	1ℓ	70	100	-	-	2ℓ	140	190	-	-	3ℓ	210	300	-	-	5ℓ	350	500	500	700	10ℓ	700	1,000	1,000	1,400	20ℓ	1,400	2,000	2,000	2,800	<p>[별표 1]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 (제9조제2항 관련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주택 및 사업장 종량제 (단위 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일반가정용</th> <th>사업장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ℓ</td><td>100</td><td>-</td></tr> <tr><td>2ℓ</td><td>190</td><td>-</td></tr> <tr><td>3ℓ</td><td>300</td><td>-</td></tr> <tr><td>5ℓ</td><td>500</td><td>-</td></tr> <tr><td>10ℓ</td><td>-</td><td>1,400</td></tr> <tr><td>20ℓ</td><td>-</td><td>2,8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일반가정용	사업장용	1ℓ	100	-	2ℓ	190	-	3ℓ	300	-	5ℓ	500	-	10ℓ	-	1,400	20ℓ	-	2,800
구분		일반가정용		사업장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016년까 지	2017년부 터	2016년까 지	2017년부 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ℓ	70	100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ℓ	140	190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ℓ	210	300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ℓ	350	500	500	7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ℓ	700	1,000	1,000	1,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ℓ	1,400	2,000	2,000	2,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일반가정용	사업장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ℓ	10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ℓ	19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ℓ	30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ℓ	50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ℓ	-	1,4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ℓ	-	2,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이민혜 (☎ 3153-8382)